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를 위한
대항 가이드북

집회에서 만나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펴내며

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 04

1장. 장소

우리가 모이는 장소를 마련합시다 11

* 집회와 장소의 허가, 이대로 괜찮은가요?

2장. 경찰

집회할 자유를 위해 경찰에 요구합시다 21

3장. 대항적 말하기

혐오에 맞서 존엄을 지킵시다 28

* 무단촬영, 어떻게 대응할까요?

목차

4장. 기록과 대응

집회에서의 인권침해를 기록하고 대응합시다 44

5장. 회복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48

나가며

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를 위한 워크노트 52

펴내며

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

'집회·시위의 자유' 하면 사람들은 경찰을 떠올립니다. 금지하고 진압하고 체포하는 경찰. 경찰은 그것을 '법 집행'이라 불렀고 시민들은 '인권침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과 싸워서 쟁취해야 할 권리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최근 경찰과는 다른 위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단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집회나 행진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거나 '논란이 되는 행사'라고 규정한 채 직접 진압에 나섭니다. 집회 장소를 미리 차지해 집회를 열 수 없게 만들거나, 행진 경로를 가로막고 누워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소수자와 집회

우선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입니다. 집회의 목적이 명백하게 전쟁과 차별을 선동하고 그것이 실질적 위험을 만들어낼 때가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수자들에게는 집회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소수자'는 사회에서 비지배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만큼 소수자의 목소리는 정당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 전달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들리게 하는 유력한 행동이 집회입니다. 강제추방에 항의하는 이주노동자들, 난민 심사가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는 난민 신청자들, 혼인할 권리를 요구하는 비이성애자들, 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청소년들… 그런데 소수자일수록 집회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소수자가 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부터 도전이 시작됩니다. 소수자를 '비정상'으로 낙인 찍는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부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광장과 거리에 나온 소수자들은 사회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처럼 비난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소수자들은 불평등한 사회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선언하고 권리를 요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들을 조직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혐오선동세력'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들은 '반동성애', '난민 반대' 등의 주장을 하며 자신들도 '집회'를 열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혐오선동세력의 목표는 자신들의 주장을 전하는 데 있기보다 성소수자나 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혐오의 표적집단이 되는 소수자들이

동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게 모이고 외칠 수 있을까요?

집회·시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엇인지부터 되짚어봅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집회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규제대상인 것처럼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경찰이 허가하는 장소에서, 안내하는 행진 경로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집회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국가권력이 '평화적'인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시켜버린 탓에 한국 사회에서는 권리의 본질이 왜곡되어 왔습니다. 집회는 자유를 실천하고 구성하는 행동입니다. 집회는 세상을 시끄럽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로운 집회'는 우리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세계인권선언도 모든 사람에게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는 평화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혐오선동세력은 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회로부터의 배제를 선동하는 말과 물리력 등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괴롭히고 위협해왔습니다. 이들이 쏟아내는 말들과 위압적 태도는 소수자들의 존엄을 뒤흔들고 공포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양쪽 집회 모두에 권리가 있다며 소수자들의 집회가 저지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곤 했

습니다. 심지어 혐오선동세력에 의해 폭행이나 감금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일어남에도 방관했습니다. 때로는 혐오선동세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소수자들을 정해진 선 안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일 수 없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일차적 의무는 국가에 있습니다. 소수자 집회와 혐오선동세력의 집회가 부딪치는 현장을 권리 대 권리가 충돌하는 현장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이 선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할 권리가 있다고 암시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 제30조의 경고를 국가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대립하는 두 집단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것만을 자신의 역할로 본다면 언제나 소수자의 권리는 빼앗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데에 어떤 집단이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다면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소수자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리기 더욱 어려운 조건이라면 그에 대한 공격과 방해를 차단할 의무가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는 이런 상황을 더욱 잘 다룰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주요 기관 행위자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즉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들을 통해 소수자들의 집회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말하기

국가가 인권에 대한 적극적 의무를 지는 행위자로서 소수자의 집회·시위의 자

유를 증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 권리의 주체로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권리는 누군가 '대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제 의무를 다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것 역시 우리의 행동이겠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봅시다.

혐오선동세력은 물리력을 써서 우리의 집회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권침해의 전부는 아닙니다. 악의적 편견을 조장하는 피켓과 구호, 경멸하듯 노려보는 시선, 입 밖으로 쏟아내는 저주 같은 말들… 그들은 우리의 존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저항입니다.

때로는 혐오선동세력의 말을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들의 말이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칼에 찔립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무시나 침묵은 혐오선동세력이 더욱 많이 말하게 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대항적 말하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적 말하기'는 우리를 지키며 우리의 자리를 넓히는 행동입니다. 말은 칼이 될 수 있지만 저절로 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혐오선동세력에 선동당하지 않는다면 그 말들은 우리를 쉽게 찌르지 못합니다. '대항적 말하기'는 방패가 되는 말들을 더욱 많이 만드는 도전입니다.

혐오선동세력의 말이 편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치 있고 따뜻하게 되받아 치는 말들은 우리에게 더욱 큰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세상에 내놓는 '대안적 말하기'도 꾸준히 모색하면 좋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혐오하고 차별하더라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세상을 바꿔가자는 희망은 말들을 통해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회에서 만나요

한 번의 집회로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집회가 남기는 희망의 실마리만큼 다음 번 집회의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지 않았습니다. 혐오선동세력이 어떤 방해를 하든 더욱 많은 소수자들이 광장으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에서 만나요 : 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를 위한 대항 가이드북』은 혐오선동세력에 맞서는 우리의 대항력을 조금 더 높여보자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혐오선동세력의 표적집단이 되는 소수자들이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안내를 모아놓았습니다. 모이고 외칠 장소를 마련하기, 경찰에 집회방해 차단을 요구하기, 기록하고 후속 활동 이어가기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여러 상황에서 더욱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거나 고민해두면 좋을 것들도 적어보았습니다. '대항적 말하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안내, 집회가 끝나도 남는 상처로부터 함께 회복하기 위한 제안도 담았습니다.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더 크게 세상을 흔드는 데에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수자들이 모여서 함께 외치는 행동은 단순히 어떤 요구를 전달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차별'이라는 구조는 끊임없이 어떤 존재를 지우고 권리를 박탈하려고 합니다. 소수자들의 집회는 지워지지 않겠다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집회는 그 자체로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엽니다. 우

리의 집회가 더 많은 평등을 이룰수록 더욱 많은 소수자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집회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평등해지기 위해 모인다는 걸 기억합시다. 혐오선동세력에 대항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가이드북이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출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세상이 평등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2019년 8월 29일

01

장소

우리가 모이는 장소를 마련합시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장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집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견과 주장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야기가 들릴 수 있는 장소의 선택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회에 대한 규탄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고, 사회 속에서 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집회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회 장소를 항의의 대상에서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헌법재판소 2000헌바67 결정).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회를 하려고 할 때 장소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집회 장소 마련을 방해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등 관련 법령과 국가 및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특히 소수자들의 집회에서 문제되는 혐오선동세력에 의한 반대집회입니다.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집회 장소 마련에 있어 원칙과 방법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집회 장소 확보를 위한 절차들

1. 집회신고하기

집시법 제6조는 실외에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는 이유는 경찰에 집회를 허가받기 위함이 아니고 행정관청에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회신고를 하려면 집회나 시위 날로부터 720시간30일 에서 48시간2일 전에 집회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면 됩니다다만 여러 지역에 걸쳐 집회를 할 때는 지방경찰청이 관할이 됩니다. 가령 종로구에서 서대문구까지 행진하는 경우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집회신고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집회도 있습니다. 집시법 제15조에 따라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특별히 고려해야 할 장소들

집회 장소에 따라 집회신고 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장소들입니다.

1) 광장

광장은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에 효과적인 공간입니다. 하지만 광장을 사용하려 할 때 지자체가 규정한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서울광장의 경우,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서울시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광장에 대해 지자체가 승인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고, 조례 등 규정이 없다면 지자체라 하더라도 사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광장이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해 어떤 조례 등을 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등에 대한 정보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elis.go.kr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공원

도심에 위치한 공원 역시 광장과 비슷하게 여러 집회 장소로 활용됩니다. 공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회 등을 위한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사를 위한 무대, 부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4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 공원과 비슷합니다. 즉 집회 자체에 대해서는 집회신고 외에 별도 절차는 없으나, 무대, 부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 시행령 제55조. 문제는 집회를 위해 천막을 치는 경우입니다. 서울시 같은 지자체는 천막은 집회물품이 아니므로 집회신고 외에 도로점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에 부수된 물품인 천막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므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7년과 2018년 열린 부산퀴어문화축제는 부산시 해운대구 구남로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남로 광장은 이름과는 달리 법적으로는 도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대설치 등을 하려면 도로법 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는 부산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였고, 그 결과 2번의 축제 모두 점용허가 없이 개최되어야 했습니다.

장소사용이 거부당한 경우

위와 같은 절차들을 진행했음에도 경찰이나 지자체에 의해 장소사용이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소수자들이 개최하는 집회의 경우 혐오에 의한 민원을 이유로 거부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한 거부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사법·행정적 방법을 통해 장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례에 따라 가능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금지·제한통고

집시법 제8조와 12조에 따르면 경찰은 집시법 상 금지된 집회, 교통소통, 신고서보완거부 등을 이유로 집회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지통고는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제한통고는 행진경로, 집회 장소, 시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금지·제한통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평화적 집회가 부당하게 금지, 제한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부당한 금지·제한통고를 받은 경우 집회 개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경찰을 상대로 금지·제한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공기관이 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그것만으로 금지·제한통고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집회 개최 직전에 금지·제한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대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집회라면, 집회를 개최하되 경찰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법원은 "미신고 집회거나 금지 통고된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산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9도13846 판결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잘 유념하면서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 2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하는 '평등행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행진경로 중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는 부분에 대해 경찰은 제한통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등행진은 국회 앞을 지나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2. 지자체의 사용거부

지자체가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 대한 사용거부를 한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미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부당하게 이를 철회한 경우라면

위 금지·제한통고와 같이 사용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부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받는 것만이 아닌 지자체의 적극적인 승인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행정심판 중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소사용에 관해 의무이행심판이 이루어지면 지자체는 관련된 처분을 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행정심판도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행정심판이 거부되거나 또는 시간이 촉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위 집회 금지·제한통고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부당한 방해를 막되 참가자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신중히 대응합시다.

2017년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제주 신산근린공원'에서 축제를 개최하고자, 공원녹지법에 따른 부스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축제 개최에 대한 반대민원 등을 이유로 부스설치 허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제주시를 상대로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부스 설치가 문제없이 이뤄졌습니다.

반대집회에 의한 장소경합

소수자들이 집회를 열 때 혐오선동세력의 반대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반동성애집회, 난민인권집회에 대한 반난민집회 등이 서로 근접거리에서 열리곤 합니다. 반대집회도 하나의 집회이므로 개최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원집회를 오직 방해할 목적에서만 열리거나 실제로 원집회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의해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장소에 서로 상반된 목적을 가진 두 집회가 집회신고를 한 경우 장소사용을 어떻게 조정할지입니다. 이에 대해 과거 집시법 제8조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계적으로 후순위 집회를 금지해 왔고, 만일 선후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 집회를 모두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접수 순서만을 따져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2016년 개정된 집시법은 중복집회에 대해 경찰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 분할을 권유하는 등 두 집회가 서로 방해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뒤에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로 무조건 금지한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또한 평화적 집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경찰이 합리적 조정을 넘어 소수자 집회에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집회 내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역시 위법합니다. 만일 경찰이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에 단호히 대처하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구들을 해 나갑시다.

2015년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은 반동성애 집회가 먼저 신고됐고 교통불편의 우려가 있다며 금지통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퀴어문화축제의 집회신고가 뒤에 신고되었다 보기 어렵고, 금지통고는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판단하면서, 위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민원을 이유로 한 장소사용 거부는 정당한가요

공공기관에서 소수자 집회를 반대하는 주민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장소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13년 10월 홍대 앞 나무무대 앞에서 성소수자 단체들의 '커밍아웃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은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무대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및 지자체는 비록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더라도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과 억압받지 않도록 편견과 혐오를 불식할 의무가 있다"며, 마포구청에 차별시정을 권고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909300 결정).

집회와 장소의 허가, 이대로 괜찮은가요?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를 다들 기억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가 조례상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지 못합니다. 2009년 광화문 광장이 개방되면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려 하는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광장조성목적을 고려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16년의 촛불, 그리고 지금도 열리는 수많은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가 시장의 재량에 의해 거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에 명백히 반합니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위와 같이 지자체가 광장, 공원 등 집회 공간을 허가하는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역시 집시법을 왜곡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집회를 관리해 왔습니다. 앞서 집회신고는 행정관청에 정보제공을 하기 위함이라 했지만,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평화적 집회는 헌법상 보호되지만 신고시간,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도 '위법한 집회'라고 경찰이 해산을 요구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의 경우 통상 신고없이 이루어지지만,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법원이 집시법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12320 판결.

이러한 상황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집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행정 절차들을 소개해드렸습

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집회를 하기 위해 이런 절차들을 파악하고 거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본 가이드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되 이를 넘어선 더 나은 사회를 함께 고민합시다. 함께 모이고 이야기하는, 결코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해서요.

02

경찰

집회할 자유를 위해 경찰에 요구합시다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완전하고 자유롭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회 참가자에게 우호적이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는 최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조장하는 집회가 소수자 인권 옹호 집회와 동시에, 가까운 장소에서 열리는 현실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폭력이나 방해 행위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경찰의 책무

집시법 제3조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집회방해에 대해 경찰의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경찰은 이에 응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근 경찰청장에게 "제3자의 집회방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629800, 의견표명.

유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6년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성소수자들도 집회에 참가하는 데 있어 반대자들에 의해 위협을 받지 않아야 하며",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하여 이러한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단지 국가가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넘어 적극적 조치가 취해질 것을 요구"하며 "이는 특히 소수자 집단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보호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막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의 의무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벌어지는 혐오선동세력의 집회방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집시법 제3조 위반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평화로운 집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우리가 거리와 광장으로 나온 것은 우리의 존재와 요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평화적 집회는 눈앞에 혐오선동세력이 없는 집회가 아니라 혐오에 대항할 수 있는 집회입니다. 우리 스스로 집회·시위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경찰의 통제 아래 놓인다면 그것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찰에게 대신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혐오선동세력의 집회방해 행위를 중지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회 현장이나 그 근처에서 혐오선동세력이 집회를 방해한다면 경찰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 참가자의 요구사항과 경찰의 집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혐오선동세력을 격리하기보다 나와 동료들을 둘러싸고 아예 외부로부터 고립시켜 '보호'하는 방식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집회를 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안전'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합니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고립시킨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경찰이 나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합시다. 우리의 요구만으로 경찰이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경찰이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적조차 하지 않는다면 분리만을 목표로 삼는 조치가 관행처럼 굳어져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최측이
할 수 있는 일

사전 준비

- 경찰이 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해 행위 등 위험한 상황을 예측하며 대응 계획을 세우는지 확인해 봅니다. 경찰은 비상시 계획이나 예방조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 만약 혐오선동세력이 집회를 방해한다면 집시법 제3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지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혐오선동세력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반대 집회 주최측에 미리 공지해달라고 경찰에게 요청합니다.

의사 소통

- 혐오선동세력의 집회방해 행위는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를 포함해 집회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가 참가자들에게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들이 집회의 맥락이나 사정 변경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과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집회 사전, 도중, 사후에 경찰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소통 방법을 미리 확인합니다. 경찰은 치안유지 활동, 안전이나 경호 관련 조치에 관하여 집회 주최자들 및 참가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경찰은 특정 장비의 사용, 표정, 몸짓과 같은 간접적 의사소통 방식들이 집회 주최자들과 참가자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주최측이 요청하여 집회 관리 시 주의할 내용들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집회 현장에 나갈 경찰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의사소통과 대화는 전적으로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2019년 6월 25일,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조직위원회는 대구시 경찰을 대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3자의 집회방해로 인하여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따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축제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대항한 결과 조금씩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집회 진행

- 혐오선동세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를 방해할 때 그것이 위법한 집회방해이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직접 경고할 수 있습니다.

- 혐오선동세력이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까지 올 수 없도록 길을 막거나 위협할 경우 경찰에게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혐오선동세력이 집회 장소를 봉쇄하고 행진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행진 경로에 뛰어들어 행진을 방해할 경우, 경찰에게 제지를 요구합니다. 혐오선동세력이 집회 현장에서 떨어져 있도록 접근 금지를 요구합니다. 만약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막는다면, 경찰이 제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닌 혐오선동세력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 혐오선동세력이 집회 참가자들을 공격하거나 위협하거나 폭행할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경찰이 없다면 112에 사건을 신고합니다.

- 심각한 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범죄임이 명백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 등 그 기준이 엄격합니다.

- 집회 후 공식적 항의나 법적 대응 등을 위해 관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꼼꼼히 남깁니다. 구체적 내용은 '4장. 기록과 대응'을 참고하세요.

집회에 참여하는 누구나 위와 같은 요구를 경찰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자 자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집회의 모든 현장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 혐오선동세력을 피하는 것이 좋은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절대적 지침이 아니므로 참고해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 만약 경찰에게 조치를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합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 만약 경찰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경찰이 막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혐오선동세력이라는 점, 경찰의 조치가 오히려 집회 참여를 방해한다는 점 등을 말하며 항의합니다.
-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은 소속과 성명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도 압박이 됩니다.

사후 평가

- 경찰에게 사후 평가를 통해 교훈을 남기는 절차를 밟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집회 대응에 있어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경찰의 책무를 더욱 잘 이행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후브리핑 제도가 운영된다면 주최측이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경찰 대응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항적 말하기

집회 현장은 혐오선동세력에 의한 '혐오표현'(Hate Speech)이 가장 가시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무엇이 혐오표현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사회적 쟁점이므로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홍성수 외, 2016).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표현, 소수자를 공개적으로 멸시·모욕·위협하는 표현,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평등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식은 법적 제재부터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항적 말하기'(Counter Speech)는 혐오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무력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맞받아치기' 혹은 '되받아치기'(Speaking-back, Talking-back)라고도 합니다.

03

집회 현장에서 혐오선동세력이 날선 말들로 소수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위축시키려 할 때, 침묵을 깨는 대항적 말하기는 저항의 틈새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대항적 말하기는 혐오표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반박하고, 모순을 지적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면서 그 발언의 의미와 위상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소수자 대신 혐오표현의 발화자를 고립시킴으로써, 혐오표현이 가진 문제설정의 관점을 뒤집고 혐오의 맥락에서 사용되던 언어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했다가 혐오세력의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면 "아, 그때 이렇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스스로 뒤늦게 떠올려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항적 말하기는 우리 스스로를 후회와 좌절에 남겨두지 않기 위한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시도해볼 수 있는 대항적 말하기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대항적 말하기 Q&A

Q. 대항적 말하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서로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경험은 참가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 발화의 주체, 대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혐오표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차별과 혐오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항적 말하기만으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인 행위가 바로 중단되거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상대가 잠깐이나마 눈치를 보면서 위축되거나 먼저 그 공간을 떠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혐오표현이 차지하던 공간을 대항의 목소리로 뒤집으려는 시도가 늘 성공할 수는 없지만, 혐오와 차별로 생긴 상처나 분노, 트라우마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나 역량에 기댈 수만은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더 많고 더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Q. 대항적 말하기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대항적 말하기를 시도할 수 있고 누군가의 대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참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집회에 당사자로서 참여하기도 하지만 성소수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로서, 장애인 부모의 자녀로서, 페미니스트의 친구로서, 이주노

동자의 동료로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 모두가 혐오선동세력에 대한 대항적 말하기를 서로 지지하고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혐오표현의 표적이 되는 집단의 구성원이 직접 대항하는 것이 더 중요한 순간이나 맥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대항적 말하기나 자기표현이 우선되도록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Q. 대항적 말하기와 대안적 말하기는 다른 건가요?

A. '대항적 말하기'Counter Speech와 '대안적 말하기'Alternative Narrative는 모두 혐오표현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엄밀하게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유럽평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항적 말하기는 혐오선동세력이나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에 정면으로 맞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소규모로 짧은 시간 안에 혐오표현이 기대고 있는 권위와 토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액션을 통해 혐오에 대항하는 목소리들이 공공장소Public Spaces를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 말하기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 대응하거나 언급하기보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이나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정치적인 논쟁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무엇을 위하여'에 초점을 둡니다. 혐오선동세력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광범위한 프로젝트에서 장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본 가이드북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대항적 말하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혐오를 멈추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항적 말하기와 대안적 말하기 모두가 필요합니다. 집회 이후 우리의 일상에서도 대안적 표현과 행동으로 지속적인 변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항적 말하기, 준비됐나요?

집회 현장에서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에 대항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도 대항적 말하기가 바로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훈련이나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혐오표현에 위축되지 않고 잘 대응하기 위해서 아래 사항들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집니다

무엇을 말할지, 어디까지 주장할지, 언제 그만둘지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중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임을 명심합니다. 대항적 말하기가 어렵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혹은 몇몇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고, 이는 참가자 개인의 역량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특정한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대체로 그러한 사회변화는 느리게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를 드러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오표현에 혐오로 대응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혐오표현이 우리를 격분시킬수록 우리의 대응은 더욱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항적 말하기가 기존의 혐오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여성차별적인 욕설을 이용

해 항의하거나, 난민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학력이나 지능을 거론하며 조롱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을 그대로 되갚는 말은 별로 효과가 없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 곁에서 나의 대항을 지지할 동료가 상처를 입거나 배제된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혐오표현 때문에 너무 화가 났다면 잠시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를 통해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재생산되지 않도록, 차별에 도전하는 새로운 말들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대항적 말하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대항적 말하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대항적 말하기를 실행하는 조건은 집회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대항적 말하기의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북에서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지만 어떤 행동이나 발언이 필요할지 혹은 적절한지 여부는 각자가 놓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대항적 말하기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방법들을 더 많이 공유한다면 혐오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항력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질문하기

서울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선전물을 나눠주는데 한 중년여성이 "이건 동성애 찬성하는 거 아니냐 말도 안된다며" 따졌습니다. 활동가는 "왜 말이 안 되나요?" 하고 되물었고, 상대는 "당신은 아들이 남자를 며느리라며 데려오면 좋겠느냐"고 다시 따졌습니다. 활동가가 "네, 저는 좋아요. 당신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하고 되묻자, 쯧쯧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 2017년 추석맞이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합동선전전 참가자 후기

혐오선동세력이 아무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거나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상화할 때 질문하기도 가능합니다. 혐오의 근거는 대체로 얕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혹은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등 구체적으로 묻다보면 금세 자원이 바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하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시청광장 입구로 들어가려는 장애인(휠체어 이용자)를 향해 입구 옆에서 혐오선동 피켓을 든 무리 중 한 명이 "몸도 불편한데 여기까지 나오냐"며 시비를 걸었다. 그는 "저는 광장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그건 장애인을 차별하는 말입니다. 차별하지 마세요."라고 응수했다.

- 2019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자의 후기 중

혐오선동세력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말이라는 점을 짚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말이네요"와 같이 혐오표현이 낳는 효과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혹은 "그런 말들이 증오범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등의 말하기로 주위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도 좋습니다.

#점유하기

'시위가는 여성들 다 메갈이라고? 100년 전엔 마녀랬었지'
'우리는_메갈이다'

- 2018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피켓, 온라인 해시태그

혐오선동세력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특정한 단어를 통해 소수자들을 규정하고 낙인찍고 침묵시키려고 할 때, 그 말을 오히려 우리의 것으로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였던 '퀴어'는 이제 성소수자 일반을 포괄하거나 성소수자의 프라이드를 드러내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꼴페미'나 '메갈'이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와 자신의 지향을 드러내는 적극적 의미로 이용되기도 하듯이요. 혐오표현을 점유하는 것은 그것이 지닌 편견과 낙인의 힘을 거부하는 것이자, 소수자들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혐오선동세력의 권력을 거부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바로잡기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한국은 저출산 1위 국가입니다, 동성애 절대 반대'라는 피켓을 든 사람에게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혐오 때문이에요! 공부를 하고 인권감수성 관련한 책을 좀 읽으세요! 제발 좀!"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 2016년 대구퀴어문화축제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 「너 나 우리 '랑'」

'가짜난민', '에이즈는 세금폭탄' 등 근거도 없는 왜곡된 정보로 혐오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건 사실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바로잡기를 시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현장에 모인 다른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시민들, 혹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깐! 이른바 '팩트체킹', 사실관계를 시시콜콜 따지는 전략은 자칫 끝없는 논쟁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내면화하고 있거나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혹은 정보를 전달하는 전략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고 소모적이기도 합니다. 바로잡기 전략은 혐오표현 발화자를 설득하기보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실을 환기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방법이 반드시 말하기의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혐오선동세력이 들고 있는 피켓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그럴싸한 문구로 포장해서 마치 사실인 양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호도되지 않도록 맞불을 놓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련한 정보를 찾고, 올바른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피켓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잠깐!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없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혐오선동세력이 주장하는 가짜뉴스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싶은데 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의 경로를 모아놓은 다음 링크를 방문해보세요.
http://bit.ly/바른정보찾기

#비틀기

우리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랍니다. / 그러나 우리들은 임신을 강요받지요
남자들은 콘돔을 하기 싫다 하지만 / 우리가 임신을 하면 도망을 가고
낙태를 한다하면 살인마라고 하네 / 우리에게 임신 거부 결정권을 내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 / 낙태죄 없애고 꽃길만 걷자

- 2016년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개사곡 "우리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랍니다"

비틀기는 점유하기와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혐오선동세력이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이 기대고 있는 논리와 전제를 문제 삼으면서 우리의 관점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태죄를 반대하는 집단은 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 '사랑'과 같은 가치를 주요한 구호로 내세웁니다. 반대집단이 주로 보수개신교 세력일 때 낙태죄 폐지 집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개사해서 참가자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은 혐오의 모순을 드러내는 전략이 됩니다.

잠깐! 혐오선동세력의 표현을 비트는 것과 비꼬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에게 딱지 붙이기, 적의를 드러내며 공격하기, 경멸하며 말하기, 철자나 문법으로 트집잡기 등은 추천되지 않는 전략입니다. 대항적 말하기의 다른 잠재적 주체들이 함께 할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공감과 협력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억제시키기

인천퀴어문화축제 때 한 중년남성이 청소년 축제 참가자에게 "어린 것들이 이런 데 나온다"며 위압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참가자가 남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고 말을 중단시켰고, 옆에 있던 또 다른 참가자는 해당 청소년을 향해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물쭈물 눈치를 보던 중년남성은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 후기

때로는 "당장 중단하세요", "그만하세요"와 같이 제동을 거는 한 마디가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은 혐오표현이 특정 개인을 향하고 있을 때 그 흐름을 끊어내고 피해 당사자에 집중해야 할 순간에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 자체에는 대응하지 않고 발화자를 무시한 채로 피해자를 향해 "괜찮으세요?"라고 물음으로써 발화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억제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혐오표현의 발화자를 침묵시키는 것 자체가 궁극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드러내기

가장 압권은 역시 호모포비아와 피켓 들이밀기였지요. 둘이 함께 몸자보를 벗어 (자꾸 밀고 들어오는 그들을 향해) 높이 들이밀었습니다. "우리 결혼했다. 게이로 잘 살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 한겨레21, "퀴어 퍼레이드 이후에 오는 것들", 2015년 7월 7일자

우리를 드러내고 말하는 다양한 표현들은 스스로를 긍정하고 존엄을 지키면서 그 자체로 대항력을 갖습니다. 혐오선동세력을 멀리 내쫓고 혐오발언을 중단시키는 것만이 우리의 최종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말들을 찾아봅시다.

#동참시키기

주변의 참가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럿이 연대하여 대응할 때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집회 주최측이나 혐오대응감시단 등에 알려 함께 대응하도록 합니다.
- SNS를 통해 현장에 없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항적 말하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단촬영을 시도하는 혐오선동세력으로부터 옆사람의 얼굴을 피켓으로 가려주는 일, 괜찮냐는 말 한 마디, 말하기를 시도하는 사람의 곁에 있어주는 것도 대항적 말하기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항적 말하기는 소수자들의 입을 막고 존재를 지우려는 억압에 맞서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권리를 각인시키는 모든 시도입니다.

말하기 자체가 무색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외치며, 더 많이, 더 끈질기게, 더 다양한 말하기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혐오표현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맞서는 대응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혐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회에 참여하면서 혹은 그 이후에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로 행동을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 온라인에서 이미 존재하는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 혐오표현의 표적이 되는 피해자나 집단과 연대를 표현하기 :
  전자 청원, 온라인 기부, SNS 공유
- 교육 및 캠페인, 자기인식의 변화를 위한 자리에 참여하기
- 가능한 방식으로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 집회·시위에 필요한 자원이나 다른 사람들을 조직하기
- 우리의 목소리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축제의 방식으로 캠페인을 조직하기

참고자료

- 홍성수 외,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ARIC, 2018, 『A Guide To Campus Hate Watch : キャンパスヘイトウオッチガイド』
- Social Media Helpline, 2017, 『Counterspeech DOs & DON'Ts』
- SPLC(The Southern Poverty Law Center), 2017, 『Ten Ways To Fight Hate : A Community Resource Guide』
- Susan Benesch, Derek Ruths, Kelly P Dillon, Haji Mohammad Saleem, and Lucas Wright, 2016, 『Considerations for Successful Counterspeech』
- The Council of Europe, 2017, 『WE CAN : Taking Action against Hate Speech through Counter and Alternative Narratives』

무단촬영, 어떻게 대응할까요?

○ 우리가 무단촬영에 대항하는 이유

페미니즘 및 성소수자 관련 집회와 퀴어퍼레이드의 경우, 집회를 방해하려는 개인이나 혐오선동세력에 의한 무단촬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온라인에 사진을 악의적으로 게시·배포하거나 혐오표현과 신상털기 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인해 물리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무단촬영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산상을 알리겠다' 등 참가자들을 심리적으로 위협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평등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외칠 대항 공간의 위축뿐만 아니라, 참여와 변화를 향한 참가자들의 대항 의지 또한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혐오선동세력이 참가자들을 떳떳하지 못하고 취약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무단촬영을 도구로 삼을 때, 이에 대항하는 것은 자긍심을 훼손하려는 의도에 항의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개입이기도 합니다.

○ 집회에 참가하기 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모든 사진촬영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현장에서 모든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전에 주최측의 촬영 및 언론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촬영 정도를 가늠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집회 현장에서든 원하지 않는 사진촬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사진촬영은 혐오선동세력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지지자들 혹은 현장을 지나가는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무단촬영을 하는 혐오선동세력이 많을 경우 참가자들도 예민해질 수 있고, 이때 집회를 지켜보거나 지나가는 시민들의 사진촬영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무단촬영이 아니라면 혐오선동세력의 혐오와 무분별함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으려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집회나 퍼레이드를 지켜보거나 궁금해 하는 시민이 있다면, 사진촬영을 막거나 항의하기보다 혐오선동세력이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주거나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를 담은 전단지를 건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미리 준비하고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집회 참가자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무단촬영의 피해를 더 크게 고려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혐오와 폭력이 발생하는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단절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자신의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집회 참여를 결정했는데 자신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나 선글라스, 피켓 등을 준비합니다.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제한적인 참여 조건에 부담이나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오늘의 집회가 끝도 아닙니다. 과도하게 좌절하지 않고 다른 참가자들을 통해 활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목소리와 요구를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에 참여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함께 항의하고, 요구하고, 경고합니다.

혐오선동세력이 자신이나 친구 및 동료, 다른 참가자들을 무단촬영하면서 위협할 경우,

- **"사진이 찍히고 싶지 않으니 촬영을 그만두고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합니다.**
- **촬영자에게 초상권 침해 소지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고 촬영물 유포 시 대응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대응의 책임을 당사자만의 역할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거나 동참하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각자가 심리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서로의 목소리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입니다. 여럿이 함께 행동하는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는 재치와 기지를 발휘하기에도 좋습니다.

- **촬영중단 구호를 함께 외치기**
- **촬영자의 카메라를 함께 둘러싸기**
- **당일에 준비한 피켓과 우산 등 집회 도구를 활용해서 촬영 방해하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응하기 어려운 조건이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또는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촬영을 시도한다면 일단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정한 사진촬영을 사전에 금지한 집회일반 참가자의 클로즈업 사진 촬영 금지, 특정 언론사 촬영 금지 등에서 언론이 무단촬영을 할 때는 촬영을 하는 기자에게 명함이름, 소속, 직책 등을 요구합니다. 개별 대응이 어려울 경우, 집회 주최자나 스탭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대응을 요청합니다.

04

기록과 대응

집회에서의 인권침해를 기록하고 대응합시다

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 상황을 기록하고 자료를 남겨 놓는 것은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고 향후에 대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집회가 종료한 후에 사법적·행정적 사후대응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록과 대응은 또한 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자 이후의 또 다른 인권침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록하기

1. 현장에서의 촬영과 기록

집회 현장에서 혐오선동세력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혐오표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영상 및 사진 촬영으로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현장도 꼭 기록합니다.

-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상대방이 잘 보이게 들고 기록합니다.
- 일시와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 상황 발생부터 마무리까지의 기록을 정리하고 보관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 그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2. 인권침해 사례 조사 및 정리

집회 현장에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회적으로 알리고 강력히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경험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집회 이후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참가자들의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집회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사건 전체의 정황을 기록합니다.
- 온/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참가자들이 겪은 인권침해 내용을 조사합니다.
- 필요한 경우 자료들을 정리하여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사후대응

1. 민/형사소송

2018년 9월 8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혐오선동세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축제 이후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역학연구실과 축제조직위원회는 각각 참가자들이 겪은 인권침해를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자회견, 고소고발, 인권위진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집회 현장에서 혐오선동세력으로부터 폭행, 협박 등 범죄피해나 기타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민/형사적 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형사의 경우 수사기관이 절차를 진행하므로 피해당사자의 부담이 덜한 반면 당사자가 절차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소인으로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절차를 통제할 수 있으나 그렇기에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인권침해 사례에서는 증거의 부족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앞서 본 기록하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 차별을 당하거나 타인에 의해 차별을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입법, 행정, 사법부와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서 인권침해 및 차별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인권위 진정의 장점으로는 법원보다 유연하

고 적극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는 등 개인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다만 권고에 강제성이 없고 민간에 의한 인권침해는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3. 행정적/기타 절차

위 방법들 외에 행정기구나 기업들의 자체적인 신고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앞서 소개한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원치 않게 집회 참가 사진이 촬영되어 온라인상에 게시, 유포된 경우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우선적 대응은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나 SNS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포털 사이트나 SNS의 고객센터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조하면 됩니다.

만일 촬영 및 게시자가 언론사라면 직접 요청하는 것 외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으로 피해가 중대한 경우 앞서 이야기한 사법적 구제방법 역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05

회복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집회 현장에서 혐오선동세력의 방해나 혐오표현에 노출될 때 주최자나 참가자들은 신체적, 심리적 외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 듯 했지만 뒤늦게 상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쉽게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즐거웠으면 즐거웠다고, 힘들었으면 힘들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집회 참여 경험과 감정을 잘 정리하고 일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면 혐오에 대항하는 힘을 조금 더 기를 수도 있습니다. 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존재 자체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처럼 주장하는 혐오선동세력에 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오롯이 긍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마주하고 이야기하기

집회 종료 후 함께 참여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당일 집회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집회가 마무리된 현장에서 또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하는 식사나 뒤풀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각자 소감 등을 나눕니다. 집회 진행 시 함께 외친 구호나 참가자의 발언, 행진 과정, 집회 구성 등 전반에 대해서 소회를 나눠도 좋습니다. 또한 집회 참여 과정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존재했다면 어떻게 대응했는지, 대응하기 어려웠다면 무슨 이유였는지 함께 나눠도 좋습니다. 만일 혼자 참여한 경우라면 집회 주최측에 문의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같이하면 좋을 단체를 소개 받아도 좋습니다.

집회 전체를 분석하고 평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기록하고 사후에 남길 수 있도록 스스로 정리하면 됩니다. 내용에 따라 사후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진행은 잠시 미뤄두고 솔직하게 소회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스스로 정리하고 가야하는 지점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회를 종합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회복은 진행될 것입니다. 집회가 꼭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은 아닙니다. 집회에 참여하여 일상 속에서 시원하게 말하지 못했던 구호를 외치고 행동하는 경험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을 잃지 않기 위해 같이 말하고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집회가 끝난 후 집회 주최측에 집회에 대한 소회와 생각 등 간단한 후기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집회 참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주최측 입장에서도 향후 집회 진행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상으로 돌아가 몸과 마음 추스르기

집회가 종료된 다음에는 몸과 마음의 피로가 몰려옵니다. 특히 소수자들이 권리를 말하는 집회 현장에서 혐오선동세력의 과도한 집회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집회 참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경험하고 이는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심신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의 이상은 없는지 자신의 상태와 변화를 잘 확인하고, 회복을 위해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일상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쉬고 싶을 때는 집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추고, 주변 지인들과 일상의 다른 대화를 나누거나 수다를 떨거나 평소 즐기던 취미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면 또 다른 행동이 필요할 때 다시 나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활력을 유지하세요!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액티비즘과 교육활동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삶의 유일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에너지와 영감을 주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제안은 소위 '대처 목록'(coping-bank)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만족시키고, 긴장을 풀면서 재충전할 수 있고, 다시 기분이 나아지도록 돕고, 상처를 받았거나 피로를 느낄 때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활동의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관계를 고민하면서 혐오표현과 싸우는 과정은 장기적이며 커뮤니티는 서로를 북돋으면서 힘을 주고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돌보는 과정(self-care, self-compassion)이 필요합니다.

- 『WE CAN : Taking Action against Hate Speech through Counter and Alternative Narratives』 중

3. 상담/지원받기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일상을 마주해도 회복되지 않는 심리적 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므로 사람에 따라 회복 과정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상담이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 전문기관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몇가지 기관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 성소수자와 관련한 온라인 상담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

· **성소수자자살예방프로젝트 마음연결** http://chingusai.net/connect, 02-745-7942

· **무지개심리상담소** maumdoboam@naver.com

▶ 트라우마 전문 비영리 민간 심리치료 센터

· **트라우마 치유센터 사람마음** 02-318-1210

2018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있었던 혐오선동세력의 집회방해 및 증오범죄로 많은 참가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축제조직위원회, 그리고 각 단체들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습니다.

나가며

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를 위한 워크노트

나는 _____ 에

_____ 위해 참여한다.

#내가_집회에_참여하는_이유 #당당한_요구 #열정적인_마음 #자긍심_권리

집회·시위의 자유는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회는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2016년 촛불처럼 부당한 정권에 맞서기 위함일 수도 있고, 불법촬영이나 안희정 성폭력 사건처럼 분노를 표출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성소수자, 난민, 장애인 등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임을 드러내기 위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촛불집회 당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참여한다고 말하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집회에 가기 전 이 집회의 목적은 무엇인지, 무엇을 요구하는 자리인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집회에 참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나는 _____ 위해

혐오에 맞선다.

#책임감 #사명감 #정의로운_마음 #사회를_지키는_마음
#혐오에_대한_이해

집회 참여 시 혐오선동세력의 방해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혐오는 혐오의 표적이 되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위축감, 무력감, 자기검열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혐오는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감과 연대에 기초한 사회정의의 가능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혐오에 맞서겠다는 마음으로 집회에 간다면 한 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혐오에 맞서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집회에 참여하는 나의 마음가짐을 살펴본다면 현장에서 혐오선동세력을 마주쳤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_____ 로
혐오에 맞설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혐오에 맞설 수 있습니다.
혐오에 대항할 때는 나의 강점을 활용해요.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아래 단어들을 보면서 선을 그어보아요.
자신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다면 아래 괄호를 채워도 좋아요.

- 부드러운
- 칼날 같은
- 세련된
- 느긋한
- 생생한
- 다채로운
- 단호한
- ( )

- 미소
- 콧방귀
- 귀여움
- 눈빛
- 여유로움
- 무심함
- 몸짓
- ( )

- 날리기
- 발사하기
- 맞서기
- 뿌리기
- 장착하기
- 끌어올리기
- 보여주기
- ( )

나는 _____ 에 맞서

_____ 라고 말할 것이다.

#바로잡기 #질문하기 #되받아치기 #비틀기 #억제시키기
#드러내기 #동참시키기 #이건_몰랐지

집회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 봅시다.
혐오선동세력의 반복되는 혐오표현 중 되받아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리 대항적 말하기를 생각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켓을 만들어가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혐오선동세력의 말에 너무 붙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요구를 말하고 사회의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를 알리는 대안적 말하기에도 도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구호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이번 집회에 참여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집회시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동료로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함께 외치고 지지하며 힘낼 준비 되셨나요?
활짝 열린 마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해볼까요?

출발

집회 장소를 알고 있나요?
화장실, 편의점 등 알아두기

행진이 예정되어 있나요?
코스 알아두기

당신의 마음을 대변할 구호가 있나요?
나만의 피켓을 만들어보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같이 가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당신에게 필요한
물건들은 무엇인가요?

☐ 피켓, ☐ 마스크, ☐ 카메라, ☐ 녹음기,
☐ 귀마개, ☐ 보조배터리, ☐ 비상연락망,
☐ 물통, ☐ 거울, ☐ 선크림, ☐ 깔판,
☐ 편안한 신발

주최측 연락처를 아나요?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필요한 연락망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제일 잘 압니다.
당신만을 위한 준비물이 있다면?

도착

발행일 2019년 8월 29일
발행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필 기즈베, 랑희, 몽, 미류, 아샤, 예정, 이영, 지오, 한희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문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홈페이지 https://equalityact.kr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본 가이드북은 국가인권위원회 <2019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